

학칙시행세칙

(제정 1989. 10.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무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조(수업연한) 삭제 <2015.2.2>

제4조(재학연한) 삭제

제3장 입학과 등록

제5조 삭제 <2015.11.24.>

제6조(재입학) ① 총장은 다음과 같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2016.12.1.>
2. 전적학과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계열 학과(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3.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2015.11.24.>
4. 퇴학 등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7.>

② 재입학생으로 결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시는 재입학을 취소한다. <개정 2015.11.24.>

제7조(편입학) ① 편입학의 절차와 학점인정 기준 등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15.11.24.>

1. 편입학절차

가. 편입학은 학생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5.11.24.>

나. 편입학은 학기 초 4주 이내에 할 수 있다.

2. 학점 인정기준

가. 편입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은 65학점 범위에서 인정하되, 미래융합대학은 60학점으로 한

다. 다만, 전공과목은 전적 대학(교)에서 취득한 과목과 편입학한 학과의 과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11.24., 2020.3.1.>

나. 삭 제 <2015.11.24.>

다. 삭 제 <2015.11.24.>

라. 편입생으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되 반드시 현재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 대학(교)의 전공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은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을 면제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3. 학점이수

가. 편입생은 졸업 전까지 학수 구분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총 인정학점은 본교 교과과정 이수학점 기준에 따르되 각 대학, 학부(과)와의 특성에 따라 학수 구분별 교과이수 영역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군 위탁 편입생의 인정학점은 본교 개설 교과목과 관계없이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교양필수(채플 포함), 기초,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본교 교과과정 기준에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2.11.>

라. 학사 편입생의 졸업학점 기준은 본교 정책과목인 신약·구약, 채플(2학기), 기초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포함하여 해당 학과의 교과영역을 이수한 총 학점이 6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악학과 학사 편입생의 졸업학점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마. 편입학 당시의 인정학점 외에는 학점을 추가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특수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생에 대한 학력조회는 편입학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4.>

제8조 삭 제 <2015.11.24.>

제9조(등록금 납부) ① 총장은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납부기일을 학기 개시 20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의하여 근신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납입 기일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역 후 복학 시에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업일수 3분의 2를 경과하여 조기 시험을 응시하고 입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수업료의 분할납부) ① 수업료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업료 분할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무지원실에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계절학과와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5조(제적)에 따라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개정 2015.6.11.>

③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휴학할 수 있으며, 미등록제적 및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학칙 제52조(등록금 반환)에 따른다. <개정 2015.6.11.>

[본조신설 2015.2.2.]

제10조(출석 및 수강신청 무효)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자의 출석 및 수강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신·편입생 등록) 신입생과 편입생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5.11.24.>

제12조(학적부 작성 등) 학적부 및 성적표는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1.24.>

제4장 전과

제13조(시기) 전과는 2학년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2017.8.18.>

제13조의2(허용범위) ① 전과는 해당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 각 학과 및 보건의계열 학과는 법령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전과 허용인원 산출 기준에 의하여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학사단위 구조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통합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할 때는 그 허용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다만, 소속 학과의 폐지 등 학사단위구조개편으로 인한 전과는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6.27.> <개정 2015.2.2., 2015.11.24.>

제13조의3(지원자격) ① 각 학년별 전과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27., 2013.12.8., 2015.2.2., 2015.11.24., 2020.3.1.>

전과 학년	이수 학기	취득 학점	
		일반학과	미래융합대학
2	2	33 ~ 64	30 ~ 59
3	4	65 ~ 97	60 ~ 89
4	6	98 ~	90 ~

② 편입생은 4학년 전과만 가능하며, 사범대학 및 보건의계열 학과 편입생은 전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2.8.> <개정 2015.2.2., 2017.8.18.>

③ 사범대학 및 보건의계열학과로의 전과는 2학년으로만 할 수 있다. <신설 2017.8.18.>

제13조의4(신청방법)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에 소속 학과장의 전출 상담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2015.2.2., 2017.2.25>

② (삭 제)

③ (삭 제)

제13조의5(전형 및 선발) ① 전과는 전적학과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거나 학과별로 면접, 필기, 실기평가 중 선택적으로 추가전형을 부가하여 각 전형요소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2013.12.8., 2015.11.24.>

② 교무처장은 전과의 시기, 선발방법 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전과 개시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7.> <개정 2013.12.8.>

③ 전형 및 선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6.27.> <개정 2013.12.8.>

제13조의6(전과의 취소) ① 전과를 허가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 후 첫 학기 수업일수 2/3 이내에 전과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27., 2015.2.2., 2017.8.18.>

② (삭 제)

제13조의7(교육과정 이수) ①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입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입학과에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 전입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4.>

③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11.24., 2017.9.1.>

[본조신설2013.6.27.]

제5장 휴학 · 복학 · 자퇴

제14조(휴학) ① 학칙 제22조제1항의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창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주 이상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11.24.>
2. 병역의무이행: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입대 하는 경우 <개정 2015.11.24.>
3. 창업 :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기 창업된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가.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나. 가계곤란
 - 다. 임신·출산·육아
 - 라.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 마. 장애학생 <신설 2017.8.18.>
 - 바. 그 밖에 학장이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휴학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1. 제1항에 따른 휴학(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 제외): 미등록 휴학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1/3 까지(다만, 등록 후 휴학은 개강일로부터 7주 이내) <개정 2015.11.24., 2020.3.1.>
2.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 군 입영일(소집일)까지
3. 학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휴학: 제1호에 의한 기간 또는 해당 사유 발생시
4. 휴학연장: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의 수업종료일부터 다음 학기 수업일수 1/3까지 (군입대 휴학생이 전역 후 일반휴학 전환 시에도 동일함) <개정 2015.11.24.>

③ 학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질병 휴학: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병·의원장 발행) <개정 2015.2.2.>
2. 자기개발 및 가계곤란 휴학: 지도교수 확인서(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 <개정 2015.2.2.>
3. 임신·출산·육아 휴학: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5. 군입대 휴학: 군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6. 군 전역 후 일반휴학: 전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및 일반휴학 증빙서류
7. 기타 휴학: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 <개정 2015.2.2.>

④ 학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특별 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제22조제4항에 따른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질병으로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개정 2015.2.2.>
2. 학칙 제22조제4항에 따른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수업일수 2/3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고처리기관의 확인서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 <개정 2015.2.2.>
3.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로 졸업 기준 충족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해당 학기에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 <개정 2015.2.2.>
4.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 준비를 할 경우: 해당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⑤ 휴학사유별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휴학: 휴학 횟수별 최장 1년
2.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 휴학: 군복무기간 <개정 2017.8.18.>
3. 임신·출산·육아 휴학: 통산 2년 이내
4. 창업휴학: 통산 2년 이내
5.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휴학: 휴학 횟수별 최장 1년
6. 학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총장이 권고한 휴학: 총장이 정한 기간
7.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의 특별휴학: 해당 연수 기간 또는 2차 이상의 수험 준비기간
8.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에게 해당 학기에 졸업 기준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특별휴학: 1 학기

- ⑥ 휴학허가를 총장으로부터 받은 자가 휴학사유 소멸로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 ⑦ 군입대 휴학생이 입영(소집)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 신청하고,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 ⑧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⑨ 학칙 제22조제1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은 학생의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2017.9.1.>

<창업휴학 제외 대상 업종>

번호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통계청 발행 제9차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에 따름

- ⑩ 창업휴학의 자격은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완료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8.3.1.>

1. 삭 제 <2018.3.1.>

2. 삭 제 <2018.3.1.>

- ⑪ 휴학생의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입대 휴학생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특별휴학생, 신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으로서 이수중인 교과목별로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한 자는 기말고사에 대하여 조기사험을 신청하고, 이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11.24.>

제15조(복학) ① 복학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전역 후 복학하는 학생은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4., 2016.2.11.>

- ② 전역일 이전에 복학할 경우에는 학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수업일수 2/3이상 수강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수강허가증 또는 휴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제16조 삭 제 <2015.2.2>

제17조 삭 제 <2013.12.8.>

제6장 교육과정

제18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각 과목에 대하여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및 시간을 정해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연습, 세미나, 실험실습, 실기 등의 과목은 2시간을 1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전공과목은 매 학년도 1개 학기에 한정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개설할 경우 I, II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9.1.]

제19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 개선은 교육혁신본부장이 안을 마련하며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과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9.1.]

제20조 삭 제

[본조삭제 2017.9.1.]

제21조(개설과목) ① 학년 및 학기별 개설과목은 교육과정편람에 따른다. <개정 2017.9.1.>

② 전공과목은 각 학년 및 학기에 균등하게 개설하고, 개설학점 범위는 그 특성에 따라 최소전공 인정학점의 2배 ~ 2.5배(전공기초 6학점을 포함하여 78학점 ~ 96학점)의 범위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1., 2019.11.20.>

③ 삭 제 <2017.9.1.>

④ 삭 제 <2017.9.1.>

제22조(교과이수) ① 삭 제 <2015.2.2.>

②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교육과정편람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17.9.1.>

③ 교양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성적표기는 취득한 모든 학점을 표기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에 대하여는 44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9.11.20.> <개정 2020.3.1.>

④ 필수로 지정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재수강 승인신청 없이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 2017.9.1.>

- ⑤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인하여 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유사과목의 학점을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

제23조 (삭 제)

[본조삭제 2017.9.1.]

제24조 (삭 제)

제7장 수업

제25조(학사일정) ①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개시 3개월 이전에 학사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 학사일정에는 학기구분, 수업일수, 방학, 공휴일, 수시시험, 기말시험, 중요행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2.2.>

③ 학사일정에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삭 제 <2015.2.25.>

제27조(수업시간표 작성) 수업시간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28조(수강인원 및 교과목 폐강) 수강인원 및 교과목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29조(수강신청 및 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업계획서를 열람 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② 수강신청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은 1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2개 학기에는 최저수강신청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5.11.24., 2017.8.18.>

③ 진로지도세미나, 사회봉사학점, 채플, 군사학 과목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0.>

④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자녀는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자녀의 수강 사실을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3.>

제30조(수강신청의 추가 및 변경) ① 수강신청의 추가 및 변경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학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까지 수강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8.>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수강지도)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 자격 유무
2. 수강신청 학점의 타당성 여부(제한, 초과)
3. 선수과목의 이수여부
4. 학수구분별 교과목 이수여부
5. 교직과목 이수자에 대한 기본 이수영역과목 이수여부
6. 다전공 신청자 지도 <개정 2017.9.1.>
7. 기타

제32조(초과신청 과목 취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자유선택, 전공선택, 교양선택, 전공필수의 순으로 취소한다. <개정 2015.11.24.>

제32조의2 삭 제 <2015.11.24.>

제33조 삭 제 <2015.2.2.>

제34조 삭 제

제35조 삭 제 <2015.2.2.>

제36조(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37조(교재선택) 본교에서 출판된 교재에 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출판교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삭 제 <2015.11.24.>

제39조(수업지원 및 관리) 수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40조(휴강 및 보강)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41조(출석) 출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42조 삭 제 <2015.2.2.>

제43조(출석 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에 대하여는 제5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4., 2016.8.29., 2018.3.1., 2019.6.25., 2020.3.1.>

1.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 현장견학, 교내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학교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홍보대사로서 학교행사를 지원하는 경우(교내축제, 교내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2016.8.29., 2017.3.1.>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3.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8.29., 2018.3.1.>
4.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6.8.29.>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가 취업(채용연계형 인턴 포함)한 경우 <신설 2016.8.29.> <개정

2018.3.1.>

6 체육특기자 및 비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해당기간) <신설 2017.11.20.> <개정 2018.3.1.>

7.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신설 2018.3.1.>

8. 학생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5일) <신설 2018.10.1.>

9.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개정 2016.8.29.>

②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포털시스템에 출석인정을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학생이 참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주관부서가 행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제5호는 출석인정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되 제7호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25.>

③ 출석인정 신청시기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는 결석일 이전, 제3호, 제4호 및 제7호는 그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제5호는 취업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신설 2016.8.29.> <개정 2017.3.1., 2017.11.20., 2018.3.1., 2018.10.1., 2019.6.25.>

④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제6호는 2분의 1로 하며, 제5호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6.8.29.> <개정 2017.11.20., 2018.3.1., 2018.10.1., 2019.6.25.>

제44조(교외교육 및 현장학습 등) 교외교육, 현장학습 및 현장견학 등의 교육은 교과목 담당 교수가 교육(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계획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취업처장(학생지원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

제45조(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 등)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46조(강사) 강사에 관하여는 「강사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19.6.25.>

제47조(강의배정) ① 강의는 전임교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전임교원이 없거나,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강사나 비전임교원을 임용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6.2.11., 2019.6.25.>

② 삭 제 <2015.2.2.>

제48조(계절수업) 일반학기 외에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교양과정을 포함한 현장 중심교육, 실무실습교육, 심화교육 등의 계절제 수업을 학기당 6학점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48조의2(사이버교육) 교육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간 컨소시엄에 따른 화상강의 및 전산망을 이용한 원격강의 등 각종 사이버교육에 관한 운영방법, 학사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수강신청편람에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48조의3(국가대표선수 이동수업) ①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선수층에 입촌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동수업 및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동수업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49조(공개강좌)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시험성적

제50조(성적평가 단위) 성적평가 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1조(성적평가)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1조의2(상대평가 반영비율) 상대평가 반영비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1조의3 삭제 <2017.12.19.>

제52조(결시신고, 추가시험 및 조기시험) 결시신고, 추가시험 및 조기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3조(성적 산출근거 관리) 성적 산출근거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4조(성적 평균산출) 성적 평균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5조(성적의 처리) 성적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6조(성적의 취소·정정) 성적의 취소·정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7조 삭제 <2015.2.2.>

제58조(학점의 인정과 보관) 학점의 인정과 보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58조의2(특별학점) ① 국가공인기관 또는 대학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증과 관련하여 기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재수강 처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18.>

- ② 교과목 중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특별인정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지정한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삭 제 <2017.9.13.>
- ④ 사회봉사활동은 매 학기 1학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평가는 P/NP로 한다. <개정 2015.2.2.>
- ⑤ 수시 입학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특별학점을 취득하면, 지정한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최대신청학점 기준에 포함한다.
- ⑥ 학칙 제31조2의 제4항에 의해 인정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까지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8.>
- ⑦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연도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8., 2016.2.11.>
- ⑧ K-MOOC 강좌는 학기당 1학점, 최대 3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8.18.>
- ⑨ 특별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신청편람으로 정한다.

제59조(성적의 통지) 성적의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60조(부정행위자 징계) 부정행위자 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9.]

제9장 삭 제

[본장삭제 2017.9.1.]

제10장 조기졸업

제66조(조기졸업)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신청편람으로 정한다.

제11장 졸업논문

제67조(논문제출 자격 및 시기) 졸업논문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다만, 복수학위 과정 신청자의 논문 신청 시기는 예외로 한다.

제68조(졸업논문 제출 및 특례) 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졸업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등으로 졸업논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69조(졸업논문 작성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 ① 졸업예정학생은 논문의 해당분야를 신청하여야 하며 각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지도교수를 정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② 학생은 졸업학년 초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논문 제목을 확정하고 졸업논문 작성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논문 작성계획서 및 논문 작성에 따른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교수 1명당 학생수는 10명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2.>

제70조(논문 작성 방법) 논문은 제출된 계획서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70매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제71조(논문 제출 시기) 졸업예정학생은 졸업 최종학기 기말시험 개시 30일 전까지 논문을 완성,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제72조(논문 심사) ①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이 정한다. <개정 2015.2.2.>

② 제출된 논문은 2명 이상의 논문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2.2.>

③ 판정은 다수결에 의하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로 판정한다. <개정 2015.2.2.>

제73조 삭 제 <2015.2.2.>

제74조 삭 제 <2015.2.2.>

제75조 삭 제 <2015.2.2.>

제76조(졸업시험) ① 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시험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각 대학 단위별 졸업종합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졸업시험의 시기는 졸업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종 학기말 시험 종료 1개월 전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11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실기발표) ① 실기발표 대상학과는 실기수업을 실시한 전공에 한한다.

② 실기발표에 따른 지도교수 배정, 심사 및 보고 등은 상기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국내·외 교육 교류제도

제78조(국내·외 교육 교류제도) 국내·외 교육 교류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제증명

제79조(증명서 종류)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국문 또는 영문증명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재학 증명서
2. 재적 증명서
3. 수료 증명서
4. 졸업예정 증명서
5. 졸업 증명서

6. 성적 증명서
7. 휴학 증명서
8.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개정 2015.2.2.>
9. 제적증명서
10. 학적부 사본
11. 교육비 납입증명서
12. 입학성적증명서
13. 장학금 수혜증명서
14. 장학금 미수혜 증명서
15. 수료예정증명서 <신설 2015.2.2.>

제80조(증명발급 신청) 제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증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교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제81조(증명 발급) ① 증명서는 학적부 또는 관련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조사·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사자 및 확인자는 증명서 소정 란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 증명서 발급은 국(영)문은 신청 즉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전이나 적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

제82조(증명발급명의) 증명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2015.2.2.>

제83조 삭제 <2015.2.2.>

제84조(증명발급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제 증명수수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학적부 관리

제85조(학적부 보관관리) ① 학적부는 학사지원실에서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6.12.1.>

② 학적부는 보관책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복사할 수 없다.

제86조(학적부 정정)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증명서류가 첨부된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2016.12.1.>

제15장 보칙

제87조(지침 및 수강신청편람)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지침 또는 수강신청편람 등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5.2.2.>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제68조는 1989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58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가목, 제7조제1항제3호의 다목 및 라목,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제48조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제1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2-20 학칙시행세칙

[별표 제1호] 삭제 <2017.9.1.>